#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4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 강선우·서미화·김 윤

김윤덕 · 소병훈 · 홍기원

이재관 · 김교흥 · 박해철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

·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 조의2 등).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군 복무,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렁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복무를 마친 경우 그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부"로 한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자녀 1인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2)제3항 후단 중 "전부또는 일부"를 "전부"로,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 제19조의2(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을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13세가 된 날에 아동 1인당 24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육자 간의 합의를 거쳐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한다. 다만,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각각의 양육자의 양육 기간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양육자 및 양육 기간의 인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3(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는 그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장애아동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하 "돌봄제공자"라 한다)이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돌봄제공자 간의 합의를 거쳐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한다. 다만,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의 발생 시기,돌봄제공자별 돌봄 제공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 가입기간을 배분하고,이를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돌봄제공자 및 돌봄 제공 기간의 인정방법, 가입기 간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 3"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의2제3항"을 "제19조의4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아동을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는 군 복무, 자녀의 출
	산과 양육,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u>복무를 마친 경우 그 복무를</u>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u> 복무기간</u>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다만,</u>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u>서 삭제&gt;</u>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 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다.

<신 설>

자였던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다)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자녀 1인당 12개월 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 다.

② (현행과 같음	-)	
③		
	- <u>전부</u> -	
제19조의2(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

입자였던 자가 아동을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13세가 된 날에 아동 1 인당 24개월을 가입기간에 추 가로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육자 간의 합의를 거쳐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한다. 다만,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각각의 양육자의 양육 기간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양육자 및 양육 기간의 인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 아동(「장애인복지법」 제50조

<신 설>

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장 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장애 아동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을 제공 한 사람(이하 "돌봄제공자"라 한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돌봄제공자 간 의 합의를 거쳐 1명의 가입기 간에만 산입한다. 다만, 합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의 발 생 시기, 돌봄제공자별 돌봄 제 공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 가입기간을 배분하고, 이를 각 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돌봄제공자 및 돌봄 제공 기간의 인정방법, 가입기간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9조의2(</u>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② (생 략)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제101조에 따른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제78조에 따른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제19소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u>전부</u>
<u>일반회계</u>
<u>지원한다</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기본연금액) ①
1 /=1=11-1 -1 수 \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다. <u>제19조</u>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

#### ② · ③ (생 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

2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제19조, 제19조의2 및 제</u>
19조의3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②·③ (현행과 같음) 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과할 수 없다.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u>제19조의2제3항</u>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략)
- ② (생 략)

1
<u>제19조의4제3항</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